

#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 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1식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21(교통정보서비스센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01,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09:00 ~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개찰일시 · 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문의)으로 갈음합니다.
- 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                      |                         |
|-----------------------|-----------------------|------------------------|----------------------|-------------------------|
| 국민건강보험료<br>▷ 497,376원 | 국민연금보험료<br>▷ 657,17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 65,355원 | 퇴직공제부금<br>▷ 318,21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br>▷ 973,518원 |
|-----------------------|-----------------------|------------------------|----------------------|-------------------------|

#### 5.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계약상대자 결정

-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불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 **본 공고 건의 A 값**

|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br>497,376원 | 국민연금보험료<br>657,17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65,355원 | 퇴직공제부금비<br>318,21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br>973,518원 | 안전관리비<br>0원 | 품질관리비<br>0원 |
|--------------------|---------------------|---------------------|----------------------|---------------------|-----------------------|-------------|-------------|
| <b>A=2,511,631</b> |                     |                     |                      |                     |                       |             |             |

-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인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 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안내공고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 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문의사항
-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리팀(☎ 051-600-0233)
  - ▷ 입찰에 관한 사항 :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리팀(☎ 051-600-0232)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재무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